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3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3월 10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3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3. 2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서연남 미래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2025. 1.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당연직 구성인원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인원·대상 정비(안 제11조제4항제1호)
 1. 직제순에 따른 표기 순서 조정
 2. 당연직 구성인원 변경 (총무과장 → 미래공간과장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자로 영등포구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

한다)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는 개편된 행정기구의 직제순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열거 순서를 정비하였고, 공공청사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을 위하여 미래공간과를 신설함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을 제외하고 소관 부서인 미래공간과장으로 대체함.

○ 검토 결과

- 영등포구는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(2024.12.06. 시행 2025.01.01.)하였으며, 행정기구 개편 사항 중, 공공청사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미래공간과를 신설함.
- 본 조례가 제정된 당시에 총무과 소관임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이 임명됨. 한편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의 두 차례의 전부개정(시행 2023.01.01., 시행 2025.01.01.)으로 본 조례의 소관이 두 번 변경되었으나 총무과장은 그대로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었음.(총무과→도시계획과→미래공간과).
- 이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의 장인 미래공간과장을 임명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0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3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25. 1.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구성인원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위원회의 구성인원·대상 정비(안 제11조제4항제1호)

1. 직제순에 따른 표기 순서 조정
2. 당연직 구성인원 변경 (총무과장 → 미래공간과장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20. 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
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미래도시국장, 행정국장”으로, “미래도시국장,
총무과장”을 “미래공간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당연직: 행정국장, 기획재정국장, 복지국장, <u>미래도시국장</u> , <u>총무과장</u> , 기획예산과장 2. (생략) ⑤ (생략)	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. 1. ----- <u>미래도시국장</u> , 행정국장 ----- <u>미래공간과장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